

아. 유동화거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위험보유규제 도입(안 제33조의2)

자산유동화 업무 및 유동화증권 등의 거래에서 유동화자산의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유동화증권 등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유동화증권 등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위험보유하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해서는 관련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 다만, 국가·지자체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등 신용위험이 낮거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서는 그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

자.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의무 및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및 제38조제1항제2호, 제5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해산사유, 자산보유자의 파산 등 중요사항 발생시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거부 또는 변경요구 업무 및 중요사항의 신고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상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 자본시장정책관 공정시장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전화 : 02-2100-2688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73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서울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방사선기기 사용 신고기관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 신고 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 신설(제63조의 2)

- 사용장소를 지정하고, 사용 전 기기의 정상상태 여부를 확인하며 장비의 안전계통 임의조작 등을 금지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제63조의3)

- 작업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부여

○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 강화(제61조(동위원소), 제63조(발생장치))

- 판매자에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전면에 부착하고 교육자료 제공을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yjh1234@korea.kr

3) 팩스 : 02-397-733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5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1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곡류 16개 품목의 기준발동물량을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새로 정하려는 것임